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69 호 2022. 11. 03.(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7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8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9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0호[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1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2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3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8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4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54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55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3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479호[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487호[건축공사 출고주차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4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490호[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6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497호[울산 강동리조트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7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

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 단체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및 제3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2. 5. 19. 시행)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시행에 따른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31조)
- 제15조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용어 설명 삭제 등으로 다른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제25조)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 조정(별표 4)
-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4호~제7호,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 중 “그”를 “이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고 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을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복구 의회”를 “복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로컬푸드 품목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중에서 구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청사의 공유재산을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개정사항 반영(제4조제1항제1호)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요재산'의 기준 신설(제11조제4항)
- 상위법령 용어 개정에 따른 변경(제15조제1항, 제19조 ~ 제23조)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 인용조항 정비(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제6조제1항)
- '수익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제20조의2)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배정에 관한 규정 신설(별표 제1호마목)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가목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100분의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65세 이상 노인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보람과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수강료 감면 기준 확대를 통하여 평생학습관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경로우대자 감면 신설(제17조제1항제3호) : 100분의 30 감면
- 자원봉사자 감면 기준 완화(제17조제1항제4호가목)
(최근 3년간 80시간 자원봉사 → 최근 5년간 80시간 자원봉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을 “사람을 말한다”로,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련된 법령”을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등록된 사람”을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당”을 “수당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6조 제목 “(지급방법 및 시기)”를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월 말 다음 달 15일까지”를 “매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관련 각종 수당 및 연금 지급일자가 변동이 많아 대상자 본인 및 유족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해진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를 삭제, 지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수당 수령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제목 변경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명시내용 삭제(제6조)
 - 제목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내용 : ‘매월 말 다음 달 15일까지’ → ‘매월’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내 문구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64-4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하 “북구 주민”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고, 북구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면제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전액 면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 경감
4. 다자녀 카드 소지자 : 100분의 20 경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0분의 20 경감

③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 등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

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사용료	다목적홀	2시간/1회 (평일기준)	3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교육장		25,000원	
	다목적실		20,000원	
이용료	재활치료 (음악·언어· 미술·물리 치료 등)	40분/회	7,000원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6조 관련)

구분	반환금액
○ 1회 단위로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사용 및 이용 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 전액
○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관하는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명칭,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 ~ 제4조)
- 복지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호대상자인”을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 중 “질병”을 “급성질환, 만성질환”으로,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을 “미

약한 가구의”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2조제7호 중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를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영 제36조제1항”을 “영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5”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성명	관계	동거여부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아동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답임교사, 사회복지사, 아·동·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input type="checkbox"/>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input type="checkbox"/>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input type="checkbox"/>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식품권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부식 배달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2. 6. 22.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1조 ~ 제3조, 제7조)
- 급식지원 대상자 범위 정비(제2조)
- 위촉위원 임기 변경(제10조) : 2년 → 3년
- 상위법령 현행화(제16조)
- 서식(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정비(별지 서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사업장 또

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

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성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지역에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제3조, 제4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제8조, 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제10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11조)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08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의2(1)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별지 제23호의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25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신천7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대	-	증 19,651	19,651	구역 신설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2)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052-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55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케이티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72, KT통신타워 6층 자산운용팀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08-9번지	하천의 명칭	○ 동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콘크리트 통신주 설치)		점용 면적	○ 영구: 3m ²
점용 기간	○ 영구: 2022. 11. 2.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479호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 공공주택지구 (효문동 105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나. 명 칭: 울산광역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열공급설비)

2. 위 치: 효문동 1055번지

3. 사업규모

가. 면 적 : 908㎡

나. 규 모 : 온수보일러: 0.8 Gcal/hr × 1대

온수저장탱크: 40㎡ × 1대 (STS 재질)

판형열교환기: 440 Mcal/hr × 2대 (STS 재질)

온수공급펌프: 입형인라인 펌프 × 7(3)대 (임펠러 SSC13. 축 STS

재질)

수소연료전지: 440kW × 3대 (두산퓨얼셀_PAFC Type)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대표 한삼건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5.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3. 7. 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8. 열람기간: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9.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및 토지세목조서 현황

(단위 : m²)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울동공공 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효문동 1055번지 (열공급 설비)	잡	908.00	908.00	908.00	울산 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광역시 남구 두왕로 (신정동)	
계			908.00	908.00	9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487호

건축공사 출고주차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1. 2.(수) ~ 2022. 11. 11.(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출고주차장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현대자동차</p> <p>다. 시 공 자 : 현대엔지니어링(주)</p> <p>라. 설 계 자 :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주)엠에이피한터인종합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 대지면적 : 121,692.00㎡ ○ 연 면 적 : 165,412.84㎡ ○ 규 모 : 지상5층 ○ 세 대 수 :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 공사기간 : 2022.10. 01 ~ 2023. 09. 30(12개월) ○ 허 가 일 : ○ 착공신고수리일 : ○ 공 사 비 : 154,000,000,000 원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102,595,416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가격 산출 - 기초금액 : 99,517,553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VAT별도)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초기점검(준공직전)	1	21,961,016	6,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정기안전점검	3	80,634,400	80,634,400	
	-			
계	4		102,595,416 원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11. 2.(수) 1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1. 11.(금) 13: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11. 11.(금) 13: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11. 9.(수) 13: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1. 14.(월) 13: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p>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p>	<p>60점</p>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 \text{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p>합계</p>	<p>100점</p>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

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점수</p>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ast \text{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준용

[별표 2-1]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자격점수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교육훈련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 사 채</td> <td>BBB- 이상</td> <td>BBB- 이상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9</td> <td>8</td> <td>0</td> </tr> </table>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별표 2-2]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6</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회 사 채</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 미만 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000 ~ 000 주택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1.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취 득일: '00.00 .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 ~ ...	비 고 (주)
점 수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 여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 . ** . ** ~ ** . ** . ** (년 월)					
2				** . ** .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 ○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월)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월)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별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별점점수 (점)	누계평균 별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 술 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별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별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별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별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별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별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증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업 책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 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실 적(건수)			
3. 신용도	계		
	점점·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 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 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7. 안전점검 내용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 명)		대 표 자 (생년월 일)		법인등 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토목분야 [] 종합분야 []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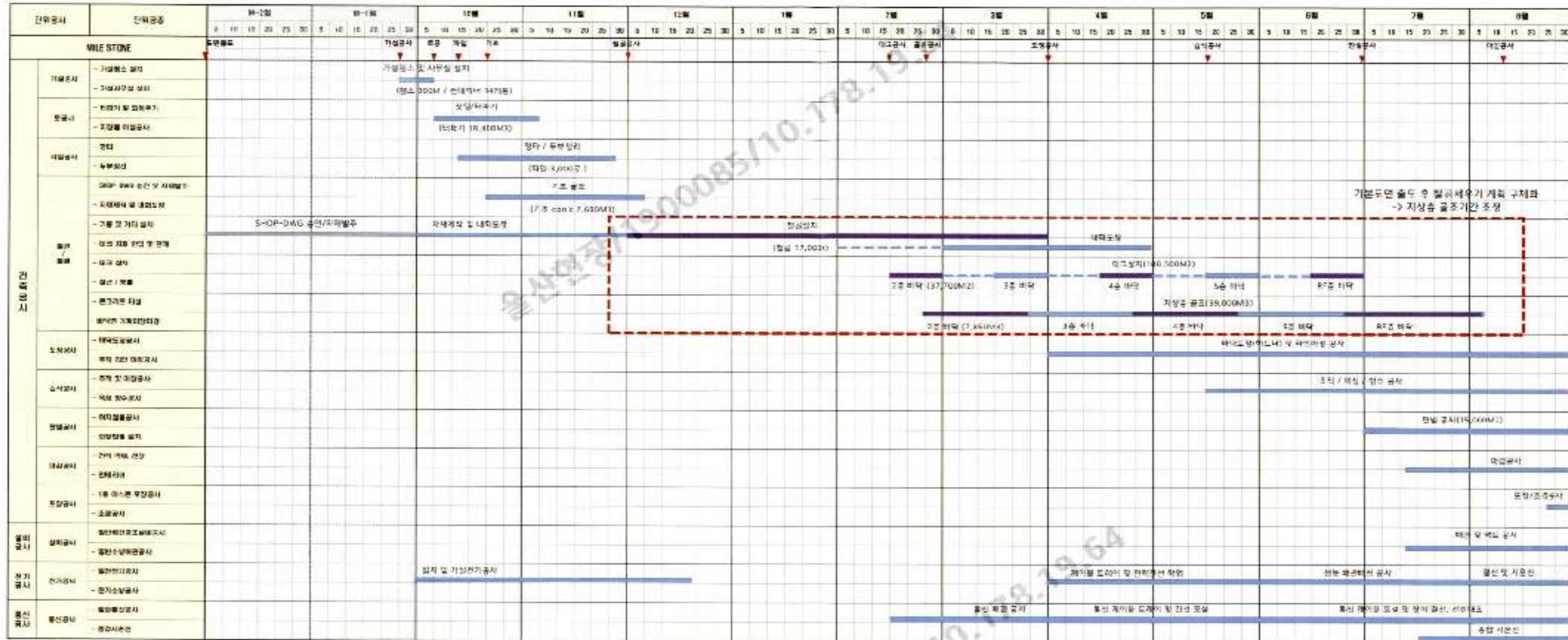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에 따른 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대외비

출고주차장 신축공사 예정공정표



본 문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정보자산이며, 본 문서에 포함된 무단복제 및 무단도용은 당사 제재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This docum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the property of Hyundai Engineering. Any reproduction or utilization of the materials without permission of Hyundai Engineering is strictly prohibited.

적은 습관으로 시작되는 보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490호

울산광역시 복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복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2조)
- 나.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안 제3조)
- 다. 의용소방대 지원 방법 등(안 제4조)
- 라. 의용소방대 포상 규정(안 제5조)

3. 근거법령

-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다. 「지방자치법」 제2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1,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2조)
- 나.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안 제3조)
- 다. 의용소방대 지원 방법 등(안 제4조)
- 라. 의용소방대 포상 규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다. 「지방자치법」 제28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11월중
- 바. 입법예고 : 2022. 11월중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2022 - 1490호

울산광역시 복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방법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정총괄과 행정6급 신청자(241-7892)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497호

울산 강동리조트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1. 2.(수) ~ 2022. 11. 11.(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 업 명 : 울산강동리조트 개발사업</p> <p>나. 사업주체 : (주)코람코자산신탁</p> <p>다. 시 공 자 : 롯데건설(주)</p> <p>라.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p> <p>마. 감 리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산246-10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08,708.00㎡ ○ 연 면 적 : 215,043.36㎡ ○ 규 모 : 지하5층 ~ 지상43층, 5개동 ○ 세 대 수 : 생활형숙박시설 696실, 콘도 278실 ○ 공사기간 : 2022. 09. 05 ~ 2027. 05. 31(57개월) ○ 허 가 일 : 2022. 05. 11. ○ 착공신고수리일 : 2022. 09. 05. ○ 공 사 비 : 324,572,651,940 원 (V.A.T 제외)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223,500,000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223,5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 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초기점검	6	5,000,000	30,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기]안전점검대가요율
정기1차	5	4,000,000	20,000,000	
정기2차	5	4,000,000	20,000,000	
정기3차	5	4,000,000	20,000,000	
10m이상 굴착	2	2,000,000	4,000,000	
천공기(높이10m이상)	4	1,500,000	6,000,000	
항타기	4	1,500,000	6,000,000	
타워크레인(설치,해체,인상)	35	1,500,000	52,500,000	
발파	2	2,000,000	4,000,000	
가설구조물(갱폼)	8	1,500,000	12,000,000	
가설구조물(5M이상동바리)	10	1,500,000	15,000,000	
가설구조물(2M이상흙막이)	2	2,000,000	4,000,000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6	1,500,000	9,000,000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6	1,500,000	9,000,000	
부대 옹벽(보강토)	2	3,000,000	6,000,000	
종합보고서	6	1,000,000	6,000,000	
계	108		223,5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11. 2.(수)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1. 11.(금)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11. 11.(금) 17: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11. 9.(수) 17:00까지

※ 적격심사대상이므로 확인서류 필히 제출(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선정제외)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1. 14.(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토목\(교량및터널, 항만분야, 수리시설\), 건축 모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업종코드\(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1398\)\]](#)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2)로 문의바랍니다.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점수</p>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ast \text{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준용

[별표 2-1]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자격점수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교육훈련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 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사채</td> <td>BBB- 이상</td> <td>BBB- 이상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9</td> <td>8</td> <td>0</td> </tr> </table>	회사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회사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별표 2-2]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6</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 사 채</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 미만 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6월 미만</td> <td>6월 이상 9월 미만</td> <td>9월 이상 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000 ~ 000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1.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취 득일: '00.00 .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 ~ ...	비 고 (주)
점 수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 여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 . ** . ** ~ ** . ** . ** (년 월)					
2				** . ** .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 ○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월)				
			. . ~ . . (월)				
	계						
참 여 기 술 인			. . ~ . . (월)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별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별점점수 (점)	누계평균 별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 술 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별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별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별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별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별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별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증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 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별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실 적(건수)			
3. 신용도	계		
	점점·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체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 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7. 안전점검 내용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 명)		대 표 자 (생년월 일)	법인등 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 야	건축분야 [] 토목분야 [] 종합분야 []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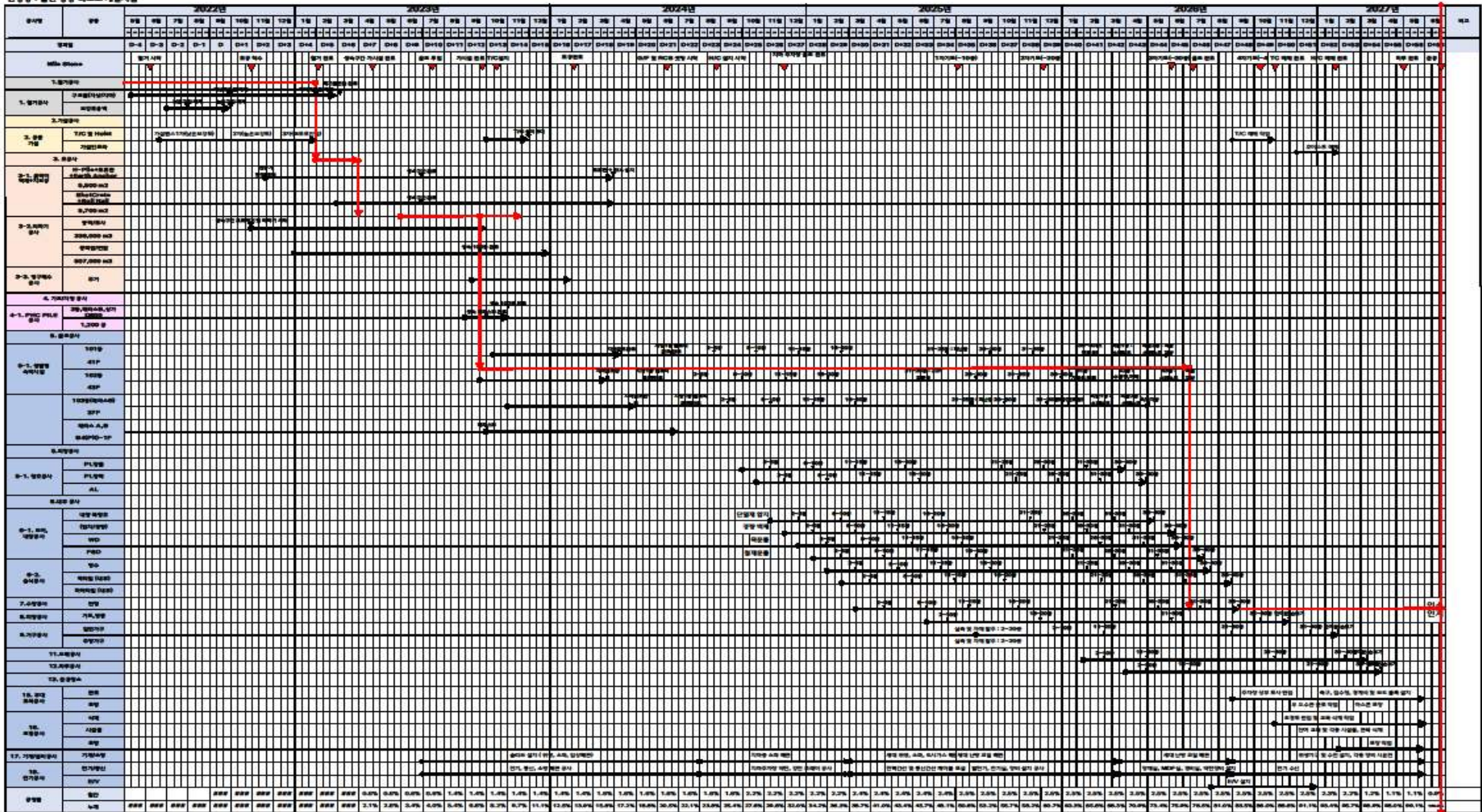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에 따른 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전 체 예 정 공 정 표

현장명 : 울산 광동 리프트 개발사업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32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8.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2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 외 1	울산 제5호	건축	
3	오름구조안전기술원(주)	박대준 정병찬	울산 제14호	건축·토목	
4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